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2. 8.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2.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97.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

나. 주요골자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보았으나 이를 10만원 이상으로 조정(안 제5조별표1)

○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에도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안 제8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변경(안 제16조 제3항)

· 경기도, 중앙부처, 타·시도의 소요조회 :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 :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10백만원으로 조정(안 제17조제4항)

○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물품을 구입하여 해당과로 인계할 때 물품인계인수서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

□ 주요골자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보았으나 이를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안 제5조별표1)

○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에도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안 제8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변경(안 제16조 제3항)

· 경기도, 중앙부처, 타 시·도의 소요조회 :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 :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10백만원으로 조정(안 제17조제4항)

○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 품종구분기준란 (1)비품②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1)비품③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을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광역시, 타 도에 소요조회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를 "경기도(시·군 포함)에"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단가 5백만원 이상인"을 "단가 1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 (생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 ·····
1.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상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1.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광역시, 타 도에 소요조회는 ····· ·····
2.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2. 경기도(시·군 포함)에 ····· ·····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 ·····단가 1천만원 이상인 ····· ····· ····· ····· ·····
⑤~⑧(생략)	⑤~⑧(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현행과 같음)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 소모품 대장	삭 제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생략)	• 물품의 종류(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분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①(생략)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1) 비품-①(현행과 같음) ② ····· ·····10만원 ····· ③ ····시장 ····· ···
(2) 소모품(생략)	(2) 소모품(현행과 같음)
• 물품상태 분류기준(생략)	• 물품상태 분류기준(현행과 같음)